2023년 거창읍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3. 05. 15. ~ 05. 19.(5일)

○ 감사범위 : 2020. 06월 ~ 감사일 현재

○ 감사중점사항

- 예산, 회계(계약, 물품관리), 농정, 세정, 복지분야 적정 처리 여부
- 시설공사 집행(관리) 적정성 및 준공 시설물의 사후관리 실태
- 민원사무처리 적정 여부, 종전 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 등

Ⅱ 감사결과

구분	행정상(건)			재정상(천원)			신분상(명)				
	계	시정	주의	계	환수	추징	계	주의	훈계	경징계	중징계
계	41	18	23	34,075	17,812	16,263	-	-	-	-	-
감사결과처분요구	29	13	16	34,075	17,812	16,263	-	-	-	-	-
현지조치요구	12	5	7	-	-	-	-	-	-	-	-

Ⅲ 주요 지적사항

1 회계 · 계약분야

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자산취득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내용연수 1년 이상 비소모품 물품 구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써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하나,

○ ‘대회의실 음향장비 구입’ 등 총 7건, 12,184천원의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비소모성 물품(비품)을 구입하면서, 자산취득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구매한 사실이 있음.

2) 법인카드 관리 및 회계처리 부적정

카드 비밀번호 변경 및 사용내역 인계인수 無, 카드 사용 후 품의(결재)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별로 부여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결재를 받아 서면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나,

○ 2020년 3월 이후 담당공무원이 3차례나 교체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법인카드의 비밀번호 변경이나 사용내역에 대한 인계인수 결재(보고)가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또한,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 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회계절차를 위반하는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 사전 품의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짧게는 2일 길게는 18일이 지난 후에 품의 결재 승인을 받는 등 법인카드 사용 회계절차를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3) 계약 · 선금이행 보증업무 처리 부적정

계약내용 변경(기간연장)에도 불구, 추가 보증서 미요구

○ 「지방계약법」등 규정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중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보증서(계약·선금)의 보증기간 연장 또는 증액된 금액만큼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또는 보증금액 증액)하도록 하여 계약·선금 이행 보증을 확보하여야 하나,

○ ‘구례 구례천 재해복구사업’ 등 2건의 건설공사와 ‘사마마을 저온창고 실시설계용역’ 등 1건의 용역에 대하여 계약 내용(계약기간 연장)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된 내용의 계약 또는 선금의 추가 보증서(기간연장)를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건설공사 특허공법 선정절차 부적정

특허공법선정 절차(공법 선정공고,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등) 이행 無

○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담당자는 공고를 통해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보유자들에게 공법 제안서를 제출 받아 공법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공법을 선정하고,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나,

○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옥상 및 방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옥상 방수공사에 적용할 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에 따른 공법선정 절차(공법 선정 공고, 공법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등)의 이행 없이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특허공법의 적용 여부만을 검토,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음.

5] 경로당 개·보수공사 분리발주 추진 부적정

사업시기·동일 구조물공사, 통합발주 노력 없이 분리발주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 사업시기 및 공종이 유사한 총 10건, 90,407천원의 경로당 개·보수공사에 대하여 통합발주를 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음.

2 건설공사분야

1)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미이행

100톤 이상 건설폐기물처리, 분리 발주 없이 시공사 직접 시행

○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시행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 '웅곡 안텅들 농로교 정비공사' 등 2건의 공사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으로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함에도 도급액에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시공사)가 시행하도록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건설공사 원가 검토 부적정

설계변경 시 상당한 이유 없이 설계내역서에 보험료와 환경보전비 미계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보험료나 환경관리비 등은 대통령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 계상하여야 하고, 준공 시에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거창 대평지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등 77건에 대하여 설계 변경 시 상당한 이유 없이 도급금액 설계(변경)내역서에 각종 보험료와 환경보전비 등을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계약 처리 부적정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523천원 감액(환수) 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 하며,

○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 할 수 있고, 건설공사 도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여야 하나,

○ 2022년 02월 25일부터 2022년 07월 23일까지 시행한 "중촌 외꼬지골 농로 확포장공사" 등 2건에 대하여 공사 착공 후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준공하였음에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523천원을 감액하거나 환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운정 운정천 안길 정비공사 소하천 점용허가 미이행

소하천 점용허가 없이 소하천 구역 내 인공 구조물 설치

○ 소하천 구역에서 인공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소하천 관리청에 소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여 관련 인허가를 받은 다음 해당 공사하여야 하나,

○ '운정 운정천 안길 사'에 대하여 공사 구간 내 소하천 횡단 BOX의 구조물이 소하천 구역에 해당되어,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공사하여야 하는데도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

5]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시행

'학동 기막골 세천 정비공사' 등 1,431건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시행

○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사업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최종 하자검사조서와 함께 결과를 제출받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처리가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 ‘학동 기막골 세천 정보공사’ 등 2,178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6]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준공정산 부적정

목적 외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2,612천원 과다지급

○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정산을 할 때에는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실적 서류를 검토·확인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를 하여야 하고 간접공사비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나,

○ ‘장팔 마을안 교량 정비공사’ 등 4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실적을 도급인이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정산(감액조정 등)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비 2,612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7]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소홀

현장 작업(소운반 등) 미이행에도 불구, 확인 없이 준공처리

○ ‘장팔 마을 안 교량 정비공사’ 등 11건에 대하여 설계내역서에 따른 현장 소운반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13,970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3 농업분야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불부합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서 부적정 발급

○ 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시 신청인의 발급요건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에 부합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발급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나,

○ 주말·체험영농의 소유 면적을 초과(6건)하거나 영농목적으로 사용(6건)하지 아니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미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음.

2)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지급 부적정

농지전용 협의 농지에 대한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부당 지급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에 대해서는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 거창읍 ◎◎리 ★★★★-★번지 등 5필지의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대하여 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4 세무분야

1) 신축 등 과세물건 취득세 과세누락

미신고·납부 신축 등 과세물건 취득세에 대한 4,813천원 과세 누락

○ 「지방세법」에 따르면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신축 등 취득한 물건들에 대해 신고 되지 아니한 물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지 않아 취득세 4,813천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2)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취득세 추징

취득세 면제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 면제된 취득세 추징 미이행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인 서민주택을 취득(1가구 1주택)한 경우에는 그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연면적 40㎡이하인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납세자 ◇◇◇ 등 3명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사실이 있음.

3)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적정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농업법인, 재산세 4,449천원 부적정 감면(과세누락)

○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르면 농업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거창읍에서는 거창읍 소재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 등 14개 법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법인임에도 불구, 재산세 4,449천원을 부적합하게 감면한 사실이 있음.

4)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대한 재산세 과세누락

과세대상 건축물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대한 재산세 2,203천원 누락

○ 고속도로 톨게이트는「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인 건축물임에도 불구, 감사일 현재까지 재산세 2,203천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5) ◇◇농업협동조합,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미적용

고유업무 미사용 및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건물 존재에도 불구, 과세 미부과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은 바닥면적 1천㎡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화재위험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2배)하도록 되어 있으나,

○ 거창읍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3필지)와 지역자원시설세가 2개 중과되지 않는 건물(1필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과하거나 추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5 복지분야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급여관리 미점검, 본인관리 확인서 미징구, 급여관리자 미지정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급여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타인의 급여 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징구하고 반기별 급여사용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거창읍에서는 급여관리실태 점검을 일부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수급비를 본인이 직접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징구 및 급여사용 실태점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신규 책정된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에 대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결식 아동 급식 대상자 관리 소홀

아동급식 자격상실대상자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재판정 미실시

○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2023년 결식 아동 급식업무지침'에 따르면 급식지원 대상자의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연 1회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급식담당자의 수시 재판정을 통해 자격상실처리 및 급식을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거창읍에서는 2023년 1월에 사망한 자격상실 대상자에 대하여 재판정을 실시하지 않아 2023년 2월~5월까지 급식지원비 총296,000원을 충전한 이력이 있으며, 2019년 8월 신규결정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2회 누락) 등 결식 아동 급식 대상자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주차표지판 회수·폐기 업무 소홀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 미송달 및 시스템 미등록

○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장애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반환통보서를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 등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장애인사용자동차를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장애인주차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 사망 등으로 장애인등록증이 말소된 ◎◎◎ 등 19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거나, 반환명령 생략이 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미회수 사유를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경로당 운영비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경로당 등 31개소,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 ☆☆경로당 등 31개소의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정산 검사하면서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내역 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소홀

통합사례관리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 사후 모니터링 미이행

○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대상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종결 후 9개월 내 2회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통합사례관리 종결자인 ★★★ 등 14명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가 종결되었음에도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경과하여 이행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개인정보동의서 미징구 등 관리 미흡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미징구 및 서명날인 누락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 업무 담당자는 통합사례관리 사업대상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시와 관련된 개인정보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인 □□□ 등 24명에 대하여 개인정보활용동의의사를 확인하지 아니 하거나(동의서 미징구), 동의서의 서명날인을 누락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7)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미선정사유 서면안내 미통보

통합사례관리 미선정 처리 대상자에 대한 서면통지 절차 미이행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지침」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미선정 처리로 결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나, △△△ 등 3명에 대해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6 기타분야

1)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 소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발급번호·발급사항 미기재 및 접수인 누락

○ 「인감증명법」,「인감증명사무편람」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은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받아 확인하고,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접수받은 위임장에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거창읍에서는 52건의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을 처리(접수)하면서, 발급번호나 발급사항을 기재하지 아니 하거나, 접수인을 누락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비밀문서 관리 소홀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비밀사본 파기 및 비밀열람기록전 파기확인자 기재 누락

○ 「보안업무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비밀문서를 취급하여야 하며, 비밀사본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파기자, 파기확인자를 명시하고, 비밀열람기록전에서 비밀을 분리하여 파기자, 파기확인자 등을 기재한 후 보관하여야 함에도,

○ 거창읍에서는 8개의 비밀사본을 파기하면서 비밀관리기록부에 파기당시 비밀취급 인가자가 아닌 자가 서명하거나, 비밀열람기록전에 파기확인자 기재를 누락하는 등 비밀문서 관리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부적정

이륜자동차 미산고자 과태료 미부과 및 사전통지 미이행

❍ 「자동차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거창읍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14명)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아니하거나, 내부결재 또는 공문발송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